

『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
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용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성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

- 법령 명칭 변경
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보전법」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→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
- 용어 정비

- 현행 : 폐수관거, 시설설치비(또는 설치비), 유지관리비(또는 운영비),
처리장, 유입차단장치
- 개정 : 폐수관로, 설치 부담금, 사용료, 처리시설, 유지차단장치

-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상 조문 정비(안 제4조, 제7조, 제12조, 제29조)
 - 위탁관리자 선정 기준,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배수기준을 「물환경보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
 - 「물환경보전법」에 규정된 권리, 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문 삭제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증가산금 부과에 관한 조문 삭제(안 제25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물환경보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·고시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인 증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